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6. 8.(월) 총 4매(본문4)	
국토교통부	항공운항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권시홍, 주무관 장여진 • ☎ (044) 201-4259, 4273, 4293	
	항공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민풍식, 사무관 홍덕곤, 주무관 김선갑 • ☎ (044) 201-4291, 4785	
	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문석준, 사무관 신경, 주무관 조영록 • ☎ (044) 201-4307, 4315	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8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항공안전, 보다 체계적·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- ▶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때 정비능력 평가
- ▶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교통안전공단 위탁
- ▶ 이달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항공안전법」 일부개정안이 '20.6.9(화)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.

-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, 그간 국토부(지방항공청)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·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.

□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항공기 신규 등록 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 확인(법 제7조 관련)

- 그동안 국제·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,

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,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.

-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‘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’을 확보 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 왔다.
- 하지만 이는 항공기 기종(대형기·소형기),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,
-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(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)의 경우,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.
-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토부는 ‘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(‘18.10~12), 공청회(‘18.12.19), 연구용역(‘19.1~6) 등을 통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“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”을 마련 중이다.
-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,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.
-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·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 하였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하였다.
- 또한,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,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,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고,
- 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·휴가 및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하도록 해,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- 앞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항공사별 필요한 정비 인력을 **종합적으로 평가한 후** 항공기를 등록하게 된다.

- 이에 따라, “항공기 1대당 00명”과 같은 **획일적 기준은 사라질** 것이며,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* 된다.

*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산출기준을 확정해 별도 고시할 계획

② **초경량비행장치 신고·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(법 제135조 관련)**

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**한국교통안전공단**이 앞으로 장치 신고·말소 업무도 수행 하게 된다.
- 국토부는 그간 서울·부산·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하여 왔으나 올해 2월 발표한 ‘드론실명제 시행(21.1월)’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*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**공단으로 일원화**하였다.

*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‘21.1.1일부터 시행(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 <https://drone.onestop.go.kr>)

-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*도 시행 예정으로,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기체 등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, 비행경력, 필기·실기시험 등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‘21.3.1일부터 시행 예정

③ **신고수리 간주제 도입(법 제93조 및 제122조, 제123조 관련)**

-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·정비규정 신고 제도 관련,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

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.

※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처리기간

신고내용	해당 관할기관	처리기간
운항규정 변경신고	-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- 서울·부산·제주지방항공청	10일
정비규정 변경신고		
초경량비행장치 (신규)신고	- 서울·부산·제주지방항공청('20.12.9일까지) - 한국교통안전공단('20.12.10일부터)	7일
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		

-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“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,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”되었다면서,

- “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 “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※ 업무별 담당자 안내

- ① 적정 정비인력 : 항공운항과 권시홍 事(☎044-201-4283)
-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위탁 : 첨단항공과 신경 事(☎044-201-4315)
- ③ 신고수리 간주제 : 항공운항과 권시홍 事(☎044-201-4283)
- 항공기술과 홍덕곤 事(☎ 044-201-4291)